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신현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794

발의연월일: 2022. 5. 30.

발 의 자:신현영·강민정·김병기

김병욱 · 김승원 · 김정호

서삼석 · 송옥주 · 오영환

유정주 • 윤영덕 • 이용우

임호선 · 정필모 · 주철현

홍기원 • 홍정민 • 이용빈

윤재갑 의원(19명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의료기관, 구급대, 항공기, 객차, 선박, 공동주택 등에 자동 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.

하지만, 실제 항공기, 기차, 선박 등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외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장비 나 의약품이 없어서 응급환자의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 운 상황이 많으므로 이들 시설에 최소한의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보유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항공기, 기차, 선박 등에서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

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3항, 제47조의3, 제62조제1항제3호의5 및 제3호의6 신설).

법률 제 호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3에 따른 응급장비 및 응급처 치 의약품을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 을 할 수 있다.

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7조의3(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의 구비 등의 의무) ① 제47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혈압계, 체온계, 산소호흡기, 응급키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을 갖추어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을 갖춘 경우 해당시설 등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·폐기·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을 구비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.

- ④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을 구비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62조제1항에 제3호의5 및 제3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3의5. 제4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을 갖추지 아니한 자
 - 3의6. 제4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장비 및 응급처지 의약품의 구비 신고 또는 응급장비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
제16조(재정	지원)	1 • 2	(생	제16조(재정 지원) ①・② (현행
략)				과 같음)
<u><신 설></u>				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
				47조의3에 따른 응급장비 및
				응급처치 의약품을 구비하여야
				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
				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			제47조의3(응급장비 및 응급처치
				의약품의 구비 등의 의무) ①
				제47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
				호까지 시설의 소유자・점유자
				또는 관리자는 혈압계, 체온계,
				산소호흡기, 응급키트 등 대통
				<u> 령령으로 정하는 응급장비 및</u>
				응급처치 의약품을 갖추어야
				<u>한다.</u>
				②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 및
				응급처치 의약품을 갖춘 경우
				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・점유
				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
				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
				따라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
				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응급

1. ~ 3의4. (생 략) <u><신</u> 설> 장비의 양도·폐기·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-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을 구비한 자 는 해당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을 매월 1회 이상 점검 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을 구비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 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62조(과태료)	(1)	 	

1. ~ 3의4. (현행과 같음)
3의5. 제47조의3제1항을 위반하
여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

	약품을 갖추지 아니한 자
<u><신 설></u>	3의6. 제47조의3제2항을 위반하
	여 응급장비 및 응급처지 의
	약품의 구비 신고 또는 응급
	<u>장비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</u>
	<u>한 자</u>
4. ~ 7. (생 략)	4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